

의안 번호	22
----------	----

2026. 7.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도서관 시설 이용기간 중에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의견에 따라 수강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설 이용 중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제2호)
- 나. 수강료 50퍼센트 감경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1) 「도서관법」 제48조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제2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5. 29.~6.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지 않는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 시간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 이 경우 남은 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제8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이용료 등) ①·② (생략)	제7조(이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③ -----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단서 삭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 시간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 이 경우 남은 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삭제>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
원

■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 7. (생략)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 3. (생략)

1 2025년 개정 시,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남창원003			
정책명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진해도서관과		
	담당자명	신홍섭	전화번호	055-225-75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진해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에 관한 기본조례인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현행 조례]에 성별특성 반영 관련 수강료 감경, 성별균형 참여 관련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명시 성별분리 통계 구축 별지 서식 성별 구분 항목이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과 관련한 개선의견임.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1. 해당조항: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산실> 7. <산실>	1. 해당조항: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적임. 특히, 조손가족은 경제적 곤란 및 손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으로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진 유형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조손가족 실태조사(세이브더칠드런, 2021)에 따르면 조손가족 가구당 평균소득은 2,17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인 4,883만원의 45%

			에 불과하며, 취약계층으로 알려진 다문화가구(4,328만원), 장애인가구(3,513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외국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문화시설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우므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참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별표2] 이용료 감면기준(제7조2항 관련) 100분의 50감면대상 1.~12. (생략) 13. 거창군에 주민
--	--	--	--

			등록이 되어있는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가족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 2 100분의 30 감면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5년 2월 2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창원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55-225-3966)			
진해도서관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남창원003			
정 책 명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진해도서관과		
	담당자명	신홍섭	전화번호	055-225-751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1. 해당조항: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2항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아래 내용 참조)이 시급하여 향후 조례 개정시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계획임. □ 주요 조례개정 내용 현행 제9조(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내용 삭제 ↳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을 해야 한다고 규정
---	--	--	---

2025년 02월 04일

진해도서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2 2026년 검토의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남창원037			
정 책 명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진해도서관과		
	담당자명	이주석	전화번호	055-225-75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진해도서관과)	도서관 시설 이용기간 중에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에 따라 수강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11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3항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성별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성별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제2항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신설하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창원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선희/055-225-3966)				
진해도서관과장 귀하				

■ **창원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증진과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도서관의 이용 신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2. 도서관 시설에 관한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0조(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그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서식 생략>

이용료 및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구 분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다목적 홀	1회 3시간	30,000원	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

2.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B5	30원	1매(단면) 기준
	A4	40원	
	B4	50원	
	A3	60원	
프린터기	A4	70원	
	B4	80원	
	A3	90원	